

여신거래약정서

(주)에스비아이캐피탈 앞

계약번호	A21-000-00
약정일자	2021. . .

본인(채무자) _____ (인)

주소 _____

자필인감확인

연대보증인(I) _____ (인)

주소 _____

연대보증인(II) _____ (인)

주소 _____

물상보증인 _____ (인)

주소 _____

[여신금융협회 사후보고일자 2024. 02. 15.]

본인(채무자) 및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주)에스비아이캐피탈(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과의 여신거래를 함에 있어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대출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 있는 경우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 표시합니다.

여신과목 (여신종류)	거래구분	<input type="checkbox"/> 개별거래 <input type="checkbox"/> 한도거래
자금용도		
운전자금융도 사후점검대상 고지사항	여신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금 사용내역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당초 신청 자금용도의 유용 사실이 확인되어 건전한 계속거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의 독촉 등과 함께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여신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통지를 합니다. 해당기한 경과 시, 채무자는 즉시 상환하여야 할 의무를 집니다. 또한 용도외 유용 1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1년까지, 2차 적발시 해당여신 상환일로부터 5년까지 신규 여신 취급이 제한 됩니다.	

여신(한도)금액	금 원 (₩)		
여신실행일		여신만기일	
약정이자율	<input type="checkbox"/> 고정금리	<input checked="" type="radio"/> 대출만기일까지 연 _____ %	
	<input type="checkbox"/> 변동금리	<input checked="" type="radio"/> 기준금리 + (_____)% <input checked="" type="radio"/> 적용기준금리 : <input checked="" type="radio"/> 금리변동주기 : <input type="checkbox"/> 3개월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12개월 <input type="checkbox"/> (_____)개월 <input checked="" type="radio"/> 기타 :	
지연배상금율	연 _____ % ※ 약정이자율 + 최대 3%, (법정 최고금리 이내)		
이자 및 지연배상금 계산방법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취급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취급금액의 _____ %	인지세	본인부담금 _____ 원
	<input type="checkbox"/> 금 _____ 원		(본인과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
※ 취급수수료는 ①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우 ② 자문제공 등 서비스 성격이 명확한 경우 ③ 신디케이트론, PF대출의 경우 ④ 자율판단 가능기업(대기업 등)에 대한 여신취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수취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input type="checkbox"/> 중도상환수수료율 : _____ %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일로부터 적용 <input type="checkbox"/> (_____)개월 이후부터 적용)		
	만기 1년 이상	중도상환원금 X 1%(부대비용)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 1%)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일)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만기 1년 미만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잔존기간* / (대출기간 - 30일) * 30일 미만 상환 시 대출사용기간을 30일로 간주합니다.	
여신실행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일 전액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일로부터 (_____)년 (_____)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나 현물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본인의 청구가 있는 대로 실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원금상환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만기일에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일로부터 매 (_____)개월마다 (_____)일에 원금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일로부터 (_____)년 (_____)개월 동안 거치하고,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매 (_____)개월 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일로부터 매 (_____)개월마다 (_____)일에 원금 (_____)원씩 분할상환하고 여신만기일에 잔여원금 (_____)원을 전액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최종여신실행 후 (_____)년 (_____)월 (_____)일부터 매 (_____)개월마다 원금 균등분할 상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이자지급방법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일로부터 매 (_____)개월 마다 (_____)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만기일에 지급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여신실행일로부터 매 (_____)개월마다 (_____)일에 지급하기로 하되, 최초 납입일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자로 요청합니다. 단, 최종납입일은 여신만기일과 같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연 대 보 증 인 (I)	연대보증인 입보가 가능한 경우			
	● 차주가 개인사업자일 때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 차주가 법인일 때(1인) □ 최대주주 □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30%를 초과 보유한 자(특수관계인 포함) □ 대표이사 □ 무한책임사원 ● 기타 □ 상기 외 대출의 목적·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성명/상호	(인)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연 대 보 증 인 (II)	연대보증인 입보가 가능한 경우			
	● 차주가 개인사업자일 때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의 지위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다른 대표자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양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분양사업자 및 해당 건축물의 시공사 ● 차주가 법인일 때(1인) □ 최대주주 □ 의결권이 있는 발행 주식총수의 30%를 초과 보유한 자(특수관계인 포함) □ 대표이사 □ 무한책임사원 ● 기타 □ 상기 외 대출의 목적·성격 및 대상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성명/상호	(인)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보 증 내 용	● 보증종류 □ 특정근보증 [당해채무(기한연장, 증액포함)] □ 한정근보증 [특정 + 동일종류 신규대출]			
	보증채무 최고액	보증기간		채무완제시까지
담보내역	여신(한도)금액(금융회사가 본 약정의 이행을 위해 지급한 금액의 총액)의 130%입니다			
특약사항				

- 제2조 (지연배상금)** ① 이자, 분할상환금을 그 지정된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여신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 부터 여신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지연배상금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약정이자율 + 최대 3%, (법정최고금리 이내)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인과 금융회 사가 합의하여 약정한 율에 1년을 365일(윤년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즉 시 금융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연배상금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 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제3조 (대출금의 기한도래전 상환)** ① 본인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본인은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제1조의 대출조건에서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 제4조 (감액, 정지)** ① 한도거래 및 분할 실행하는 여신의 경우,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본인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여신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금융회사는 통지에 의하여 제1조에서 정한 여신(한도)금액을 줄이거나, 거래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여신실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전항에서 정한 사유가 해소되어 정상적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곧 감액, 정지를 해소하기로 합니다.

제5조 (인지세의 부담) ① 본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본인과 금융회사가 반씩 부담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제6조 (담보, 보험) 본인은 금융회사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행된 여신으로 건설 또는 설치된 시설물을 그것이 설치된 토지, 건물 및 그 안의 기타시설과 함께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요청하는 경우 금융회사가 동의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청구권에 금융회사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니다.

제7조 (관리자금의 예치, 청구 및 제한) ① 본인은 차용한 자금을 금융회사가 관리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관리자금계좌에 예치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청구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예치한 관리자금에 대하여 본인은 제3자 앞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8조 (제3자의 변제 및 대위변제) ① 제3자가 본인을 대위하여 이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제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은 금융회사의 동의를 얻기로 합니다.

② 연대보증인, 연대채무자 등 이해관계인은 변제 등에 따른 대위에 의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권리를 금융회사와 본인 간의 거래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행사하지 않기로 하고,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그 채권 전부를 변제받은 다음에 변제받기로 하며 또한 금융회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권리를 무상으로 양도하기로 합니다.

제9조 (통보와 조사) ①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및 대출조건 이행여부, 기타 필요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자료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은 즉시 제출하고 조사에 필요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청구가 없더라도 본인은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③ 본인은 금융회사 앞으로 제공한 담보물 등에 중요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본인이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를 적용하여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제10조 (추가약정서) 본 약정서 외에 필요한 경우 추가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 본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동 약관과 본 약정서의 규정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본 약정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기로 합니다.

본인(채무자) 및 그 연대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은 여신거래기본약관 및 본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고 그 주요 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 인 (검 채 무 자)	자필서명 및 (인)
	연 대 보 증 인 (I)	자필서명 및 (인)
	연 대 보 증 인 (II)	자필서명 및 (인)
	물 상 보 증 인	자필서명 및 (인)